

● 제330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**서울특별시 이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의안번호 2603)  
검 토 보 고 서**

2025. 4. 22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 강석주 의원 발의 】

의안번호 2603

### I. 개정안 개요

#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 안 자 : 강석주 의원 (찬성 36명)

나. 제 안 일 : 2025. 3. 31.

다. 회 부 일 : 2025. 4. 2.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안이유

-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의거하여,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급식위원회를 신설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.

##### 나. 주요내용

- 아동급식위원회 신설(안 제12조의3제3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 및 시행령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 (2025.4.5.~4.9.) 결과 : 의견없음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임영미)

### 1 개정안의 개요

- 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지역 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.
- 지원대상<sup>1)</sup>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서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으며, 지원방법은 아동급식 카드, 도시락 배달, 단체급식 등 아동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서울시는 학기 중 중식(교육청 지원)을 제외하고 1식당 9,500원<sup>2)</sup>을 시:구=5:5로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음.
- 보건복지부는 아동 급식지원 사업과 관련해 ‘2025년 결식 아동 급식(지방이양)업무 표준매뉴얼’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주로 재정 지원, 사업 전반 점검·지도, 기초자치단체는 예산확보 및 사업 운영으로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음.

1) 보건복지부 ‘2025년 결식 아동 급식(지방이양)업무 표준매뉴얼’, p.4

①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등 가정의 아동이면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
②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(교사, 사회복지사, 이·통·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)

③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
2) 2025년 보건복지부 권고단가

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36조(급식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「통계법」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.

### <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주체별 담당업무>

| 구분     | 주요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광역자치단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관할 시·군·구 아동급식 재정 지원, 분담 및 통계 총괄</li> <li>• 아동급식 전반(예산 등)에 대한 점검, 지도</li> <li>• 관할 시·군·구 아동급식 신청 안내 및 홍보</li> </ul> |
| 기초단체단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아동급식 운영 및 관리, 예산확보, 홍보 및 안내</li> <li>• 아동급식 지원체계 구성·운영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개정안은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 서울시의 재정지원 수립과 사업 전반의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임.

## 2 주요사항 검토

### □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(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)

- 안 제12조의2제3항에서는 아동급식 지원 및 자치구 아동급식 사무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급식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### <신·구조문 대비표>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2조의3(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노력) ①·② (생략) | 제12조의3(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노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|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.<br>1.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|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2. 자치구 아동급식 사무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<br>3.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- 보건복지부 ‘2025년도 결식 아동 급식(지방이양)업무 표준매뉴얼’ (이하 “표준매뉴얼”)에 따르면 아동급식 지원체제로 ‘아동급식위원회 설치·운영’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‘시장·군수·구청장’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·의결 등을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<표준매뉴얼 내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<sup>3)</sup>>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나. 아동급식위원회 설치·운영<br>① 설 치<br>●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·의결 등을 위하여 ‘아동급식위원회’를 설치함.</u> 다만, 조례로 타 위원회에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별도 설치 불필요<br>② 기 능<br>●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결정,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<br>●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<br>●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·시행<br>●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<br>●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<br>●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3) 보건복지부 ‘2025년 결식 아동 급식(지방이양)업무 표준매뉴얼’, p.9.

- 따라서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급식지원 대상아동 결정, 급식지원 방법 선정 등을 위해 기초 단위인 구청장이 설치하는 위원회로 보이는데, 이를 광역 단위인 시장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-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2항 제3호에서는 ‘국가 및 지자체는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’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해 법령에서 ‘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’라는 명시적 수권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 표준매뉴얼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일반적인 행정규칙으로 보여짐.

#### <아동 급식지원 관련 법령>

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(건강한 심신의 보존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
2.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
3.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
4.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

- 또한 같은 법 제6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제1항에서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의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기준에서는 자치사무로, 자치구 기준에서는 기관위임사무로

보여짐.

### <아동 급식지원 관련 위임 법령>

「아동복지법」 제6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, 시·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(생략)

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56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

2. (생략)

⑥ 시·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85조(국가사무나 시·도 사무 처리의 지도·감독)에서는 ‘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·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·도지사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’라고 규정하고 있음.

### <「지방자치법」제185조 제2항>

「지방자치법」 제185조(국가사무나 시·도 사무 처리의 지도·감독) ② 시·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·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·도지사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
- 따라서 시장의 사무인 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·감독을 위해 이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해

보임.

□ 아동급식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(안 제12조의 3제4항 신설)

- 안 제12조의3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‘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’의 기능을 「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‘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’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2조의3(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노력) ①·② (생략)<br><br><신설> | 제12조의3(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노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br><br>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<u>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 |

- ‘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’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 및 「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서울시가 매년 수립하는 아동정책시행계획과 보호대상 아동<sup>4)</sup>의 보호 및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

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내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음.

- 「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제8호에서는 ‘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’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‘아동복지심의위원회’는 ‘아동급식위원회’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여짐.

#### <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>

「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3.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
4.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
5.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
6.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
7.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**

-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<sup>5)</sup>에 따라 조례에

4)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(정의) 4. “보호대상아동”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.

5)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

근거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바, 서울특별시 아동급식 위원회 설치에 관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해 보임.

- 다만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급식위원회를 대신 해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심의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동 급 식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해보임.
- 참고로 서울시 내 자치구 중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도봉구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을 아동급식과 관련된 전문가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과 보건위생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학부모, 교사, 교육청 관계 공무원

2. 시민단체, 종교단체, 자원봉사단체, 급식단체(업체), 음식점협회, 영양사 협회,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
④ (생략)

- 또한 안 제12조의3제4항에서는 안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‘서울 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’를 ‘위원회’로 약칭하고 있음.

---

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그러나 안 제12조의3제3항 본문에서는 ‘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’를 ‘위원회’로 별도 약칭하고 있지 않으며, 현행 조례(「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) 제7조(위원회의 설치)에서 이미 ‘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’를 ‘위원회’로 약칭하고 있어 안 제12조의3제4항에서의 ‘제3항에 따른 위원회’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‘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’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.

#### ※ 집행기관 의견(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)

- 소관부서는 자치구에서 정하는 구체적 사무 외에 아동급식 지원의 원활한 추진 및 발전안 모색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서의 市 급식위원회 설치에 대한 ‘원안동의’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.

### 3 종합의견

- 개정안은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사업에서 서울시의 재정지원 수립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자문기구인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임.
- 보건복지부 ‘2025년도 결식 아동 급식(지방이양)업무 표준매뉴얼’은 구청장이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보이며,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56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제6항에서 시장의 관련 권한을 구

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185조(국가사무나 시·도 사무 처리의 지도·감독)에 따라 서울시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해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.

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
| 문 의 처          |
| (02-2180-8148) |